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국 가 공 무 원 복 무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직선거 사무종사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며,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하도록 함.(안 제11조의2 신설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3. 7. ~ 3. 15.)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선거사무 종사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사 후 6주 이내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1. 「공직선거법」 제146조의2제2항에 따른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
 2. 「공직선거법」 제147조제9항 및 같은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투표사무원 또는 사전투표사무원
 3. 「공직선거법」 제174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원
 4. 그 밖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
- ②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휴무에 1일을 더하여 부여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1조의2(선거사무 종사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사 후 6주 이내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1. 「공직선거법」 제146조의2제2항에 따른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2. 「공직선거법」 제147조제9항 및 같은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투표사무원 또는 사전투표사무원 3. 「공직선거법」 제174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원 4. 그 밖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②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휴무에 1일을 더하여 부여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복무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45